(별첨 1)

**신고 보상 기준**

1. 신고보상대상: 외부 일반인, 신고내용과 업무가 무관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2. 보상기준
3. 보상금액
4.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보상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  |  |
| --- | --- |
| 금액 | 보상금 지급기준 |
| 1천만원 이하 | 미지급 |
| 1천만원 **초과** | 보상대상가액의 3%(최대 1천만원) |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간발생 예상금액을 보상 대상 가액으로 한다.
* 정도경영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약은 보상대상 가액에서 제외한다.

1. 보상대상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기타 사항의 발생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연결관계에 있는 자회사 또는 해외법인과 관련된 신고보상은 ‘신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 및 보상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별첨 2)

**신고 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1. 목적

본 규정은 비윤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기술한다.

2.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정도경영실장
2. 위원: 3명 - 정도경영실 부장급, 해당 사안을 감사한 선임감사인, 윤리경영사무국 섹션리더
3. 간사: 윤리경영사무국 섹션리더
4. 배석: 비윤리행위 감사담당

3.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심의 및 의결한다.

1. 비윤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비윤리행위 신고사항을 1인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5. 의사결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간사 및 배석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2. 부의 안건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실무자를 참석시켜 의견의 청취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4. 간사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의안을 통보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끝.